

-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안 자 : 정진철 의원 외 9명

나. 의안번호 : 제552호

다. 제출일자 : 2019. 3. 29.

라. 회부일자 : 2019. 4. 3.

### 2. 제안사유

○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 노후경유차 제한, 친환경차 구매,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, 대규모 나무심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,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중 상당부분이 자동차임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대상에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·전기자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가·강조하여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
수소 연료전지자동차·전기자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에  
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(안 제3조제2항제6호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,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19. 4. 8 ~ 2019. 4. 15

○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) : 원안동의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를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소 연료전기자동차·전기자동차(이하 “전기·수소차”라 한다)로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·수소차 보급 확대 및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“서울 전기차 시대”<sup>1)</sup>, “수소차 선도도시, 서울”<sup>2)</sup>을 선언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, 수소차 3천대 시대를 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
- 그 결과, 2011년 73대를 시작한 전기자동차는 2018년 누적대수 11,580대에 이르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량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<sup>3)</sup>이며,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13,600대, 307대를 보급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전환 및 전기택시·전기버스 확대

---

#### 1) ‘서울 전기차 시대’ 공동선언문 발표

- 일시 : 2017년 9월 24일 / 장소 : 서울광장
- 참여기관 : **서울시, 서울시의회, 환경부, 주한유럽연합(EU)대표부, 우리은행, 녹색서울시민위원회**)
- 주요내용 : **전기차 보급 확대**, 모든 주유소 급속충전기 설치, 관련 조례 개정 등

#### 2) ‘수소차 선도도시, 서울’ 발표(2018.10.29.)

- 주요내용 : 2021년까지 권역별 총 6개 수소 충전시설을 구축, **2022년까지 수소차 3천대 보급**

3)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('18.12)

| 구분 | 계             | 2011      | 2012 | 2013 | 2014  | 2015  | 2016  | 2017   | 2018  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계  | 57,289        | 338       | 753  | 780  | 1,075 | 2,907 | 5,914 | 13,826 | 31,696 |
| 서울 | <b>11,580</b> | <b>73</b> | 285  | 330  | 212   | 452   | 455   | 4,112  | 5,661  |

도입<sup>4)</sup>과 같은 친환경 정책 추진에 힘을 실고 있음

### \* 2019년 전기·수소차 보급 목표

| 구 분 | 10년(09~18년) 간 보급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올해 보급 목표량 |
|-----|--|-----------|
| 전기차 | 11,428대 (승용 9,857, 택시 160, 버스·화물 68, 이륜 1,343) | 13,600대   |
| 수소차 | 84대  | 307대      |

- 한편, 동 조례에서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<sup>5)</sup>의 경우에도 서울시는 “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 추진계획”을<sup>6)</sup> 통해 3,000대의 전기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전기버스 29대를 운영 중에 있고, “친환경 수소버스 시범도입 추진계획”으로<sup>7)</sup> 7대의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를 도입할 예정임<sup>8)</sup>

또한 “2019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계획”을 통해 현재 운행 중인 160여대의 전기택시 외에 2019년에 3,000대의 전기택시 도입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

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전기 및 수소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<sup>9)</sup>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 보급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4) 서울시 보도자료(2019.2.11.), 서울시, 올해 '전기·수소차 2만 5천대 시대'…11일부터 보조금 접수

- 전기택시 ('18년 100대→올해 3천대), 전기버스('18년 30대→올해 100대)

5) 『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』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(시내버스, 농어촌버스, 마을버스, 시외버스)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(전세버스, 특수여객자동차,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) 및 수용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

6) 버스정책과-14662, 2018.5.31.

7) 버스정책과-31050, 2018.11.15.

8) 서울삼성여객에서 수소버스 1대 운영 중임

9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

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따라서, 여객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등으로 개선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조<sup>10)</sup>에서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책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
- 다만, 관련 법<sup>11)</sup>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“전기자동차, 수소 전기자동차”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해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

---

10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) ③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11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- 후략 -